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6. 18(금) 평창군수(농업경영과장)
나. 회부일자 : 2004. 7. .
다. 상정일자 : 2004. 7. 5(월) 제1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농산물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산지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소규모 영농의 한계 극복과 농산물 물류이동의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된 농산물산지유통센타를 운영의 활성화와 농업인 유통시설 운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타를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 요 골 자

가. 설치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타의 설치·운영)

나. 대상건축물 설치현황
- 소재지 :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330-2번지외 3필지 부지 4,298㎡
- 사업비 : 1,055,000천원(국비:738,000,도비:94,860,군비:1,640)
- 준공일 : 2003.10.16
- 시설내역
  · 집하장 : 233.5㎡
  · 선별장 : 400.8㎡
  · 소포장실 : 110.4㎡

· 예냉 · 저장실 : 331.2㎡
· 기타 : 94.1㎡

- 기계 · 장비류
· 감자 선별기 : 1조
· 구근세척기 : 1조

다.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검 토 결 과

○ 본 유통센터는 봉평면 원길리 산330-2번지에 위치하고 총사업비 1,055,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집하장, 선별장, 예냉 · 저장시설을 갖추어 2003년 10월 20일 준공한 현대식 농산물 유통센터로

- 평창군에서는 본 건물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생산 및 지역농업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인 봉평농협에 시설물을 무상임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본 시설물의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 본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 · 개보수 · 제공과금의 부담자 지정, 운영자 의무 등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 명문화한 것으로 내용 ·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